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

- | | |
|---------------------------|--|
| 1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 2 소득기준 충족 | - 월평균소득이 우선공급 130퍼센트, 일반공급 160퍼센트 이내이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3 과거 주택 소유 無 |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4 1순위청약 요건 충족 |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무주택 세대주 |
| 5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 | - 청약접수일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 9,648,256원	9,222,468원 ~ 11,350,728원	9,222,468원 ~ 11,350,728원	9,611,742원 ~ 11,829,835원	10,111,431원 ~ 12,444,837원	10,611,120원 ~ 13,059,838원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배정세대수	A-4블록 183세대 / A-9 블록 98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이내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60%이하인 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청약자격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p>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오산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